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3.21.)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의 정비 및 경쟁제한적 규제인 자동차경주장, 썰매장,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법 개정(2023.3.21.)에 따라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부칙 제4조 삭제

- 병설해야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규모 및 준공기한 규정(제13조) : 삭제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시, 관리기관에 예치해야하는 금액 및 시기 규정(제14조) : 삭제
- 조성비 예치자는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 비회원제 골프장 설치·운영 등에 사용(제15조) : 삭제
- 대중골프장 병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4조) : 삭제

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3의 부지면적 제한 사항 삭제

업종	제한내용
가. 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골프연습장업 (실외 골프연습장 업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등), 제14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등), 제15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부칙 제4조(대중골프장 병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 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並 設)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비회원제 골프장 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삭 제>
1. 비회원제 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 골프장 : 6홀 이상의 비회원제 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 장 : 6홀에 18홀을 초과 하는 9홀 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 상의 비회원제 골프장	
2. 비회원제 골프장의 준공기한 회 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전까지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공사를 마 칠 것. 다만,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그 등록신청 당시 병설할 비회 원제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현행	개정(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의 준공기한을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 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단서에 따라 비회원제 골 프장을 직접 병설해야 할 자가 부 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설이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회원제 골 프장 조성비를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비회원제 골프장 조 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이라 한 다)에 예치(豫置)하게 해야 한다. 1. 예치금액 : 제13조제1호에 따 라 병설해야 할 비회원제 골프 장 1홀당 예치금액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상일 것 2. 예치시기 : 회원제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 제1차	<삭 제>

현행	개정(안)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및 등 록 시에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을 현 금으로 예치하게 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제1차 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 또는 등록신청 당시 제1차분의 비회원제 골프 장 조성비를 사업계획 승인 시 에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분의 비회 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 한을 그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 록일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 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 하게 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3조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라 비회원제 골 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설이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가 신청 을 하면 그 비회원제 골프장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않고 비	

현행	개정(안)
<u>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예치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신청할 때에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제1차분·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해당 분에 대하여 같은 항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해야 한다.</u>	
<u>제15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제4항제2호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移管)</u>	<삭 제>

현행	개정(안)
<u>받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u> <u>1. 비회원제 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u> <u>2. 비회원제 골프장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u> <u>3. 법인의 설립·운영</u> <u>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④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u> <u>1.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예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입(預入)할 것</u>	

현행	개정(안)
2.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관할 것 3.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 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법 제31조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외에는 예치받거나 이관받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반환하지 말 것 4.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 기관은 예치된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재정보증 조치를 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장소, 설치 규모, 이용료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⑥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前)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2. 전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한다) 1부 ⑦ 제6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039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039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 (대중골프장 병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003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의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	<삭 제>

현행	개정(안)								
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1.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2.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업종</th><th>제한내용</th></tr> </thead> <tbody> <tr> <td>가. 자동차경주장업</td><td>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td></tr> <tr> <td>나. 골프연습장업 (실외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td><td>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td></tr> <tr> <td>다. 썰매장업</td><td>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td></tr> </tbody> </table>	업종	제한내용	가. 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골프연습장업 (실외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제8조 관련)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2.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 <삭 제>
업종	제한내용								
가. 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골프연습장업 (실외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156